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12. 10 선고 2024가단2641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12.

판결 선고2024. 12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
선내(가)부분 건물 32.8㎡를 인도하고,
나. 5,200,000원 및 2024. 6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,000원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남효정

별지